간호원의 구속에 대하여

—무죄 판결 위해 투쟁—

부산시지부에서는 부산진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김영자간호원이 지난 8월 9일 억울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처분된데에 격분 이의 무죄 판결을 위해 분투 노력 중에 있다.

한편 이의 보고를 받은 본협회에서도 즉시 윤수복총무가 부산으로 내려가 진상을 파악하고 김간호원의 보석은 물론 전국 간호원의 직권옹호를 위해 계속 활약하고 있다.

즉 지난 18일밤 부산으로 내려간 윤총무는 부산시의사회장, 부산시의사회 고문, 본협회 부산지부장, 부지부장과 함께 부산직할시장을 방문코 부당한 처사임을 밝히는 반면에 시보건소의 최고책임자인 부산시장으로서 김간호원의 무죄 판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산시 보사국장을 대동코 부산 지방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방문코 보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교도소로 피해자인 김영자간호원을 찾아 위문하고 진상을 청취했다.

이어 부산진구보건소를 찾아 결핵관리실 담당 간호원에게 그당시의 상황을 청취하고 보건소장을 만나 부산시내 6개보건소장이 무죄를 밝히는 서명날인한 진정서 사본을 얻고 담당변호사 서윤학씨를 만나 협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영자간호원은 가족계획지도요원으로 결핵관리실의 박보란간호원을 도와 이날 S. M. 주사를 실시했으며, 이날의 상황을 보면 200명이상의 S. M. 주사환자가 있어 혼자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어 김영자간호원에게 의뢰한 것이라 한다.

특히 이날 환자는 보건소에서 S. M. 주사를 맞은 후 증상이 이상하다고 했으나 마침 의사가 없어 인근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며, 환자는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방에 가서 약을 사먹었는가 하면 또 부산시립병원을 거쳐 메티놀병원에 가서 사망하였는데, 이 시각은 이미 S. M. 주사후 50시간이나 경과한 후이었다.

뿐만 아니라 S. M. 주사후 찾아간 부산시립병원에서의 진단은 "결핵성 뇌막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중추마비, 중간선행사인이 바이루스성 뇌막염, 선행사인이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김영자간호원은 의사처방에 의해 정당하게 주사하였고 주사후 보호자의 호소에 대하여 병원에 가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이란 억울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산지부에서는 모든 간호원들이 김영자간호원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협회에서도 S. M. 주사후 작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과학적인 증명을 의뢰하는 한편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죄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